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조치 소홀

기 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용

울산광역시 5개 구·군청¹⁾(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적공부²⁾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2014. 1. 1. 부터 2017. 12. 31. 까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현황(131건)을 울산광역시 관할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³⁾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이

1)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2)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함

3)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7612, 판결)

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99호, 2017. 6. 23.) 제20조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적측량수행자⁴⁾는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경계의 위치가 지상과 다른 경우 등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이 통보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등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2016. 7. 4.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서 토지면적에 잘못이 있어 통보된 ○○군 ○○면 ○○리 000-00번지에 대하여 2018. 3. 감사일 현재까지 토지면적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표]와 같이 등록사항 정정 대상 4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⁵⁾

[표] 지적공부 등록사항 미정정 토지 현황

4)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 등록된 자

5) 이에 대해 ○○군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될 수 있어 정정을 반대한다는 사유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미조치 토지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정완료 시까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하겠다는 조치계획 제출

연번	연도	지적소관청	토지 소재지	지적소관청에서 통보받은 일자	등록사항 정정 사항
계			총 4건		
1	2016	○○군청	○○면 ○○리 000-0	2016. 7. 4.	사정 시 면적결정 착오
2	2016	○○군청	○○면 ○○리 산00-00	2016. 8. 8.	분할 시 면적결정 착오
3	2016	○○군청	○○읍 ○○리 000-0	2016. 8. 23.	분할 시 면적결정 착오
4	2017	○○군청	○○면 ○○리 000-0	2017. 10. 26.	분할 시 면적결정 착오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군수는

[시정] 지적공부 등록사항 미정정 토지 4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등록사항 정정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적공부 관리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